

##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 충남대서 개최

(대전=뉴스와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 공청회가 충남대에서 개최된다. 건설교통부는 5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최병선 국토연구원장, 충남대 양현수 총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충남대 양현수 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안전핵 공공연구단장과 민법식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충남대 이진숙(건축공학과) 교수, 충청대 남기현(행정학과)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김용웅 원장,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처장, 목원대

이건호(도시공학부) 교수, 대전상공회의소 김인수 이사, 충남도청 김문섭(건설교통국) 국장 등이 참석하여 토론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충남 공주·연기 지역에 건설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기본 계획의 개요, 도시건설 여건 분석, 도시건설 정책 목표 및 미래상, 부문별 도시 개발방향, 사업추진방안, 개발계획의 수립방향 등에 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

건설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 해외건설, 중동 찍고 동유럽·아프리카로 확대

### • SK건설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루마니아 현지공장 완공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해외건설이 제2의 황금기를 맞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중동 위주에서 탈피해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주가 중동 등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지역의 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다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2의 달러 박스 동유럽·아프리카 잡기 = SK건설은 지난 8일 루마니아에서 국내 건설업체로는 처음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공장(사진)을 준공했다.



총 사업비는 4600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지만 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SK건설측의 설명이다.

손관호 SK건설 부회장은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유럽과 같은 신규 시장 개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며 “중동 시장을 탄탄히 다지는 것과는 별개로, 오일머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제 3시장 개척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동유럽 주변 국가로 수주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진국인 캐나다와 영국에서도 석유 플랜트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와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아

프리카도 최근 들어 각종 도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활발하다.

지난해 전체 해외 수주액 중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였지만 올 들어 3월까지 19.1%로 높아졌다. 이는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산유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과 플랜트 공사 발주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업체들은 나이지리아에서 아프리카 전체 수주액의 75% 가량을 따내고 있다.

◇불투명한 제도 등 장벽 걸림돌 = 하지만 국내 업체들의 동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시장 진출은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 걸음마에 불과하다. 특히 중동, 동남아를 제외한 지역은 나라마다 관세장벽이나 해당 국가 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유럽의 경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등이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 아시아보다는 유럽 건설사에게 개발 혹은 시공 우선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기본적으로 외국 업체가 큰 수익을 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게 현지 정부의 일반적인 태도”라며 “특히 동유럽, 남미의 경우 불투명한 인·허가 절차는 물론 세금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 사업 담당 한 임원은 “중동, 동남아 위주의 해외 건설 수주에서 탈피해 제 3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것은 건설업체 모두가 인식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시장 선점효과에만 급급해 냉정하게 자신의 역량을 평가하지 못하고 진출할 경우 실패의 쓴 잔을 맛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시, 영종도 '항공물류도시 개발방안 연구용역' 발주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를 항공산업과 물류산업이 복합적으로 융합된 국제적 특성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인천시는 오는 15일 '항공물류도시 개발방안 연구용역' 사업설명회를 갖고 2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30일 평가를 실시해 6월 중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영종도를 오는 2016년까지 항공물류기반의 국제적 특성화 도시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영종도 개발방안은 동북아지역의 항공 및 물류산업 추세변화에 맞춰 인천공항 주변을 항공물류 중심지로 육성할 전략을 마련해 개발 모델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 필요예산 추정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담게 된다.

또 다국적 항공물류기업 본사 유치, 공항 배후 물류단지 조성, 중단거리 저가 항공사 설립, 개성공단 사업 지원 및 북한산 수출품 물류 지원 체계 확립, 중국시장 개방에 대응한 글로벌 제조기업의 물류센

터 유치, 차세대 RFID(전자 태그) 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등도 제시된다.

이번 용역은 3억원이 예산이 투입되며 제안서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를 합쳐 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영종도 '항공물류도시 개발방안 연구용역'은 내년 4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업체는 전문가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계약 후 4개월 이내에 항공물류도시의 기능과 역할, 모델을 수립해 1차 중간보고하고 7개월 이내에 주요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해 2차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인천공항이 자리잡고 있는 영종도를 동북아 항공물류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가 항공물류산업의 메카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주시, 행복도시 관련 아파트 건립 활기

(11개 지역, 약 6,000여 세대 건립 예정)

공주시에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과 연계한 도시계획변경 관련 아파트 건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로 공주시 신관동 신월초등학교 인근에 현대5차 홈타운 아파트(8동, 306세대)가 금년 9월 입주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착공 예정인 아파트로 신관동 주공5차아파트 주변에 30년 임대를 목적으로 5동 517세대(대한주택공사시행)와 금학동 일대에 가칭 e-편한세상 아파트 9동 476세대, 유구읍 석남리 유구읍 사무소 후편에 1동, 44세대 등이 착공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아파트로 신관

동 주공5차 아파트 주변(관골)에 10동, 412세대 건립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다. 또한 금흥동 소재 제일농장 인근에 약 800여 세대, 신금택지개발지구에 약 1,000여 세대, 현대3차아파트 주변에 약 1,000여 세대, 관골주변에 약 450여세대, 웅진동 지역에 약 700여세대, 금학동 지역에 약 700여 세대 등의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시 관계자(도시건축과장 전정일)는 행정도시 건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별로 새로운 역할 분담과 도시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기존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최대한 살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불법 옥탑방 '사면'

옥탑방 등 무단증축·불법건축물이 8일부터 한시적으로 양성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2007년 1월8일까지 건축물을 어진 주택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건축물 '전과기록'이 한시적으로 사면된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1만5천~2만 가구가 양성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 양성화 대상은 =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00평 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면적이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다. 연면적에는 불법으로 증축한 면적도 포함된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단독·다가구주택으로 사용되는 복합용도 건축물도 불법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이 해당 면적 이하이면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주차장법 등 다른 법 위반 건물도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정비구역 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양성화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 한번 이상 납부해야 =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는 물탱크실, 계단실, 베란다를 불법으로 없애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건축물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들 건물에는 1년에 1~2회 자치단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건물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

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1년간 유효한 한시법이다. 양성화 신고 접수 이후 지자체에 설치된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처리 기간이 30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양성화 허용 기간은 11개월이다.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완공된 건축물'로 제한한 것은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이후 2년이 경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건축물만을 양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자치단체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조례로 1년에 한두 차례, 총 4~5회 이내에서 부과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등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물 완공 시점이 2003년 12월 31일 이후인 건축물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자체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건축물도 그 완공 시점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양성화 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처벌받은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한번 이상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강제금은 불법건축 면적별로 다르게 부과된다.